면세점 이용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점 이용]

국내외 여행객의 증가와 함께 국내 면세점 시장도 급성장하여 많은 국민이 여행 전에 국내의 면세점 및 지정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입한 면세품을 교환 · 환불하거나 A/S 받고자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이 콘텐츠는 면세점 및 지정면세점에서의 면세품 구입, 인도, 교환 · 환불, 통관 등 종합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이용 1
1. 면세점 이용 개관 4
1.1. 면세점 알아보기 4
1.1.1. 면세점이란? 4
1.1.2. 면제세금의 종류 5
2. 면세점 이용하기 8
2.1. 면세품 구입하기 8
2.1.1. 해외여행 시 면세품 구입 8
2.1.2. 제주도여행 시 면세품 구입 13
2.2. 면세품 인도받기 15
2.2.1. 해외여행 시 면세품 인도 15
2.2.2. 제주도여행 시 면세품 인도 17
2.3. 교환·환불 및 A/S 받기 17
2.3.1. 해외여행 시 면세품의 교환·환불 및 A/S 17
2.3.2. 제주도여행 시 교환·환불 및 A/S 18
3. 면세품과 통관 20
3.1. 통관절차 알아보기 20
3.1.1. 통관절차 개요 20
3.1.2. 세금납부 및 이의신청 22
3.2. 면세품 국내에 가져오기 27
3.2.1. 세관신고 27
3.2.2. 휴대품검사 31

1. 면세점 이용 개관

1.1. 면세점 알아보기

1.1.1. 면세점이란?

면세점이란 ?

특허면세점(보세판매장)

▪ "특허면세점(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이하 “면세점”이라 함)을 말합니다(「관세법」 제196조제1항).

지정면세점

▪ "지정면세점"이란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와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면세품판매장으로서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지정·고시하는 면세품판매장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면세점의 종류

외교관면세점

▪ "외교관면세점"이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을 말합니다(「관세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08조 및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및 그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및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1. 대사관 또는 공사관의 참사관·1등서기관·2등서기관·3등서기관 및 외교관보
2.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총영사·영사·부영사 및 영사관보(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를 제외함)
3. 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외무공무원으로서 위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출국장면세점

▪ "출국장면세점"이란 출국장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합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시내면세점

▪ "시내면세점"이란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합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 · 인터넷면세점 : 위 면세점들은 전자상거래의 방법에 의해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인터넷면세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96조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제2항 및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

· 기내면세점: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 내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내면세점이라고 합니다(「관세법」 제143조제1항).

지정면세점의 종류

지정면세점

▪ "지정면세점"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위치한 국내선 공항·여객선터미널의 출발장 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성산포항 중 제주세관장이 지정한 곳에 설치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1.1.2. 면제세금의 종류

물건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 귀금속, 고급시계, 모피, 담배 등 특정한 물품을 구매한 사람은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주세

▪ "주세"란 주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주세법」 제1조).

▪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주세법」 제3조제2호).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란 담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항).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가.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외국으로부터 입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를 이용하여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경우를 포함)하는 사람의 휴대품·탁송품(託送品)·별송품(別送品)으로 반입하는 담배 또는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 그 반입한 사람은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49조제3항 본문).

▹ 다만,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제49조제3항 단서).

교육세

▪ "교육세"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교육세법」 제1조).

▪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와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교육세법」 제3조제1호·제4호).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지방세법」 제149조).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4호).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수렵용 총포류, 그 밖의 오락용품, 고급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는 제외), 고급 가구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3호).

관세

▪ "관세"란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 내국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해 「관세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관세법」 제4조제1항).

> ※ **간이세율**
>
> · 「관세법」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81조제1항).
>
> √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
> √ 우편물(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제외)
>
> √ 탁송품 또는 별송품
>
> ·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일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물품의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고려해 간이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81조제1항·제4항).

면세점 물품 구입 시 면제되는 세금

면세점

▪ 관세

▹ 면세점 물품은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 있는 물품으로서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재반입 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 부가가치세

▹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 개별소비세

▹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2조제2호).

▪ 주세

▹ 여행자가 입국할 때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주세도 면제됩니다(「주세법」 제20조제2항제4호).

▪ 담배소비세

▹ 입국자가 반입하는 일정량 이하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가 면제됩니다(「지방세법」 제5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지정면세점

▪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제1항).

환율 적용

환율 적용

▪ 국내의 면세점은 모두 동일한 환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날의 전일(최종 고시한 날을 말함)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 적용됩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제4항제1호].

2. 면세점 이용하기

2.1. 면세품 구입하기

2.1.1. 해외여행 시 면세품 구입

이용대상

외교관면세점

▪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주한외교관 및 외국공관원에 한해 외교관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관세청고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제1항).

출국장면세점

▪ "출국장"이란 공항·항만 보세구역 내에서 출국인 또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이 항공기 또는 선박을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

▪ 출국장면세점은 출국하는 내·외국인 및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제2항).

시내면세점

▪ 시내면세점은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 위치하므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 한해 시내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제2항).

여권 및 항공권

여권

▪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도 여권이 필요합니다(「여권법」 제2조).

▪ 여권에는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 여권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여권법」 제7조). 특히, 여권번호, 여권명의인의 영문성명이 다른 경우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없으므로 면세품을 구입할 때에는 여권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면세품의 주문 후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개명 등의 이유로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미리 구입하신 면세점에 연락해 여권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출국 항공·여객선 정보

▪ 면세점은 일반 쇼핑몰과 달리 해외 출국이 확정된 내국인과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점을 이용하려는 경우 확정된 출국 날짜와 시간, 편명을 알아야 합니다.

▹ 여행 일정이 변경되거나 출국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미리 면세품을 구입한 면세점에 연락해 출국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주문

외교관면세점에서의 면세품 주문

▪ 외교관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세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면세통관신청서를 외교관면세점에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88조,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4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17호서식).

▪ 주류와 담배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면세통관의뢰서를 제출하고 승인한도 내에서 주류와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4조제1항 단서 및 별지 제19호서식).

시내면세점에서의 면세품 주문

▪ 출국하는 당사자에 한해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제2항).

▪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 구매자는 자신이 서명한 교환권(전자서명에 의한 전사식 교환권 포함)을 발행받습니다. 전자식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인도하는 때 여권 등으로 구매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제1항).

출국장면세점에서의 면세품 주문

▪ 출국하는 당사자에 한해 출국장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제2항).

▪ 출국장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바로 면세품을 인도받게 되므로 여권과 항공권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면세점에서의 면세품 주문

▪ 출국하는 당사자에 한해 인터넷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

▪ 인터넷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 구매자는 자신이 서명한 교환권(전자서명에 의한 전사식 교환권 포함)을 발행받습니다. 전자식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인도하는 때 여권 등으로 구매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제1항).

기내면세점에서의 면세품 주문

▪ 기내면세점의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내면세점명	사이트 주소
에어부산 면세점	https://dutyfree.airbusan.com/
제주항공 기내면세점	https://www.jejuair.net/ko/cabinService/service/dutyFree.do
아시아나항공 면세점	https://dutyfree.flyasiana.com/
대한항공 기내면세 SKYSHOP	https://www.koreanairdfs.com

결제

현금결제

▪ 현금영수증

▹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2호).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 인터넷면세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때에는 안전한 구매를 위해 원하는 경우 물품을 공급받을 때까지 제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하면 입금완료 시 보험증서가 발행됩니다.

▪ 대금영수

▹ 판매대금은 원화 또는 외화로 영수할 수 있으며, 외화로 영수 하였을 때에는 환율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절사하고 거스름돈이 없을 때에는 원화로 지불하여야 합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

카드결제

▪ 국내 및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해외사용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면세품 구입 시 유의사항

구입가능시간

▪ 시내면세점 및 인터넷면세점의 경우 면세품을 인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출국시간으로부터 일정 시간 전까지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 기내면세점의 경우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하려는 면세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입가능한도 및 면세한도

▪ 구입가능한도

▹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한도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제4항).

> ※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한도(미화 5천달러)를 폐지하여(2022. 3. 18. 시행) 이후 출국하는 내국인은 보세판매장에서 한도 제한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12호 2022. 3. 18. 발령·시행) 제개정이유문 참조)].

▪ 면세한도

▹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국내 면세점 및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등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 술 : 용량은 2ℓ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 향수 : 100㎖

▹ 다만,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고, 「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합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비행기 환승

▪ 비행기를 환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하물을 바로 최종목적지까지 보내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은 기내에 반입하게 됩니다.

▪ 액체폭탄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으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의 권고에 따라 2007년 3월 1일부터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 포함)에 대해 액체·겔류의 항공기 객실 내 휴대반입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액체, 분무 및 겔류를 항공기 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64호, 2021. 6. 14. 발령·시행) 제5조제1항].

▹ 용기의 최대용량이 1ℓ(20.5㎝X20.5㎝, 25㎝X15㎝ 또는 이와 동등한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투명하고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에 담겨져야 하며, 용기들은 이 봉투가 완전하게 닫힐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일 것

▹ 용량이 100㎖ 또는 이와 동등한 용량(3.4온스, 100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들어 있을 것

▹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일부 분량의 액체, 분무 및 겔류를 담아서 운반하지 말 것. 단, 100㎖를 초과하는 빈 용기는 반입 가능

▹ 플라스틱 봉투는 승객 1명당 1개만 휴대할 것

※ 액체, 분무 및 겔류가 담겨 있는 플라스틱 봉투는 보안검색을 받기 전에 다른 짐과 분리하여 공항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 다만,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항공기 내에 휴대하여 반입할 수 있습니다(출처 :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출발-출국절차-제한물품>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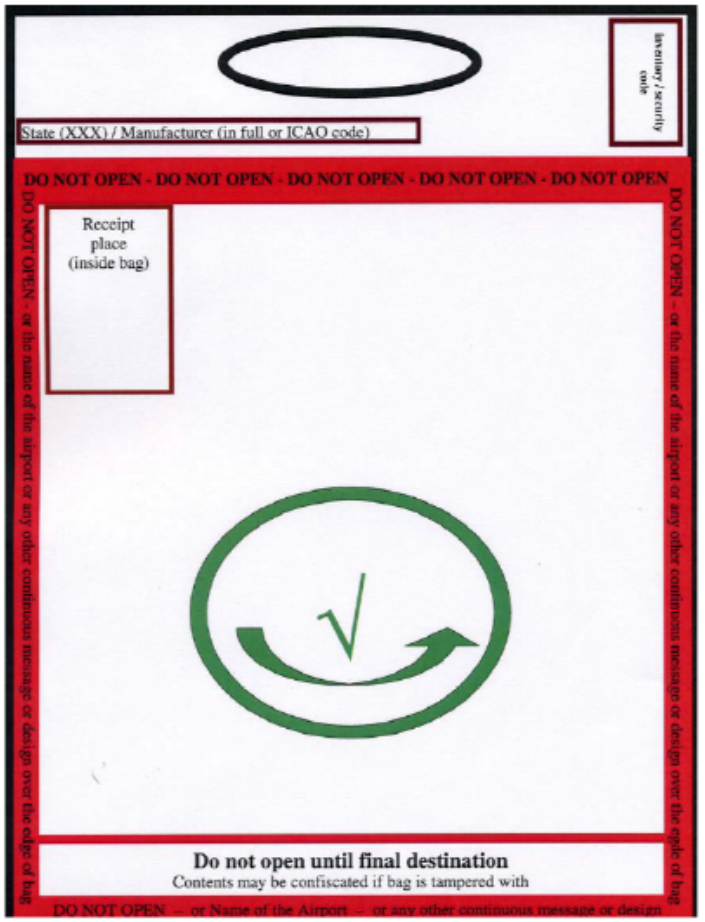
▹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훼손탐지가능봉투(Security Tamper Evident Bag, STEB) 안에 해당 물건이 들어 있을 것

▹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훼손탐지가능봉투 안에 동봉 또는 부착되어 있을 것

▹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훼손탐지가능봉투가 미개봉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

> ※ **훼손탐지가능봉투(Security Tamper-Evident Bag, STEB)**
>
> · 훼손탐지가능봉투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인증한 밀봉 가능한 비닐봉투를 말하며, 이 봉투는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습니다.
>
> · 훼손탐지가능봉투는 면세품 구입국가부터 최종 목적지국가까지 유효하므로 봉투를 뜯지 않더라도 귀국을 할 때에는

구입한 액체·겔류 면세품을 항공기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국 시에는 구입한 액체·겔류 면세품을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출처: ICAO 홈페이지>

※ 액체류 2차 검색

· 2006년 8월 영국발 미국행 항공기 7편에 대한 액체폭발물테러를 계기로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전세계 자국행 항공기의 탑승객에 대해 공항 출국장 검색(1차)과는 별도로 항공기 탑승구 앞에서 가방개봉 등 액체류 물품을 추가로 검색하는 등 항공기 탑승 전 2차 검색을 해 왔습니다.

· 2014년 1월 31일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기의 탑승객에 대한 2차 검색이 면제되어 액체면세품을 탑승 직전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액체류 면세품을 탑승구에서 따로 받을 필요 없이 다른 면세품과 동일하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기의 탑승객에 대한 2차 검색은 2014년 12월부터 면제될 예정이며, 호주행 항공기의 탑승객에 대한 2차 검색은 시행 중이므로 액체류 면세품을 출발 1시간 전까지 구입해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14. 6. 12. 보도자료>

※ 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 수용 여부에 따라 국가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공항에서 환승을 할 때 보안규정이 상이하여 휴대한 액체·겔류 물품에 대하여 압수·폐기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국가의 환승객 보안규정에 대해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입국국가의 통관 규정 확인

▪ 각 국가는 각자의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통관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이더라도 외국에 입국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통관 규정에 따라 통관절차가 이루어집니다.

▪ 따라서 국내 입국시 면세가 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해당 국가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라 과세가 되거나 반입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입국하려는 국가의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통관 규정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외국세관의 여행자 통관에 관해서는 관세청의 < 해외통관지원센터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2. 제주도여행 시 면세품 구입

이용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항공기 또는 여객선에 의하여 출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은 지정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면세품 구입 방법

신분증 및 탑승권 제시

▪ 지정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구매자의 신분증(세관장이 인정하는 신원확인 방법을 포함,19세 미만자의 경우 의료보험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 포함) 및 탑승권(예약확인서 포함)을 제시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8조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

▹ 탑승권을 발권하기 전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탑승권이 아닌 예약확인서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지정면세점 운영자는 구매자가 신분증 상의 본인인지 여부, 19세 이상인지 여부, 연간 구매회수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여행객 본인이 구입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본인에 한해 지정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4조).

▪ 면세품물품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4조에 따라 부정구매하려는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단체여행객에게 일괄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포장 및 인도할 때에는 구매자별로 각각 포장하여 인도하여야 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

주문 내역 확인

▪ 주문을 한 후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

▹ 구매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신분증번호)

- 판매물품 내역 : 내·외국물품 종류, 품명, 규격, 단가, 수량 및 금액
- 탑승내역 : 탑승예정인 항공기 편명 또는 선박 명칭

면세품 구입 시 유의사항

구매한도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은 지정면세점에서 1회에 미화 800달러 이하로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5조제2항).

-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은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5항).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은 연도별(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6회까지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6항).

▪ 면세주류 및 면세담배는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고,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5조제3항 및 제6조).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수량</th><th>비고</th></tr>
<tr><td>주류</td><td colspan="3">2리터</td><td>가격은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이하로 한다.</td></tr>
<tr><td rowspan="6">담배</td><td colspan="2">궐 련</td><td>200개비</td><td rowspan="6">1회에 한 가지 종류로 한정한다.</td></tr>
<tr><td colspan="2">엽궐련</td><td>50개비</td></tr>
<tr><td rowspan="3">전자 담배</td><td>궐련형</td><td>200개비</td></tr>
<tr><td>니코틴용액</td><td>20밀리리터</td></tr>
<tr><td>기타유형</td><td>110그램</td></tr>
<tr><td colspan="2">그 밖의 담배</td><td>250그램</td></tr>
</table>

지정면세점의 부정 이용에 대한 제재

▪ 다음의 사람은 해당 면세물품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지정면세점의 이용이 제한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4조).

-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사람
- 면세물품의 구입을 위해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람
-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사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주세 및 관세가 부과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0조).

- 지정면세점에서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사람
- 면세물품을 부정유출한 면제점운영자
-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 제주특별자치도를 여행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사람

▪ 운영인이 면세물품 구매한도 금액, 구매횟수, 구입수량을 초과해 면세품을 판매하거나 여행객이 아닌 사람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 또는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각종 세금을 운영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다른 여행객의 명의를 이용해 부정하게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해당 면세물품에 대한 관세 등 각종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제3항).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2호).

2.2. 면세품 인도받기

2.2.1. 해외여행 시 면세품 인도

인도방법

출국 당일 인도

▪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 시 출국장 내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인도받습니다(「관세법」 제213조제3항).

▪ 따라서 출국 당일에만 면세품의 인도가 가능하며 입국 시 또는 입국 이후 택배 등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면세품 구매자가 면세품을 구입할 때 물품을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송부를 요청하는 경우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 송부의뢰서를 3부 작성해 1부는 구매자가 가지고, 2부는 판매물품과 함께 통관우체국 또는 항공·해상화물 탁송·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인도됩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8조제11항 전단 및 별지 제22호서식).

- 이 경우 해당 면세품은 인도장에서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않고 지정한 해외의 주소로 바로 배송됩니다.

여권, 탑승권 등 제시

▪ 면세품은 해당 공항 또는 여객항에서 출국 심사 후 지정된 면세품 인도장에서 여권, 탑승권 및 면세품 구입 시 받은 교환권을 제시하고 인도받습니다.

▪ 따라서 여권번호 및 여권상의 영문성명 등이 다른 경우 구입한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여권번호가 잘못된 경우 세관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국 사실 등을 조회하여 본인여부 및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8조제7항제5호).

인도확인 서명

▪ 면세품을 인도받으면 물품의 품명, 수량 등을 확인하고 면세품 구매자는 직접 서명하여 인도확인을 해야 합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8조제7항제1호).

> ※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한도(미화 5천달러)를 폐지하여(2022. 3. 18. 시행) 이후 출국하는 내국인은 보세판매장에서 한도 제한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12호 2022. 3. 18. 발령·시행) 제개정이유문 참조)].

면세품 인도장소

시내면세점 및 인터넷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 시내면세점, 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판매장에서 바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서명한 교환권을 발행받고 출국 시 출국장에서 해당 물품을 인도받습니다. 전자식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교환권번호를 통보한 후 인도하는 때 여권 등으로 구매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제1항).

> **※ 면세품 인도장**
>
> · "인도장"이란 시내면세점 및 전자상거래에 의해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곳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6호).
>
> √ 출국장 보세구역 내에 설치한 장소
>
> √ 외국무역선 및 외국여객선박의 선내
>
> √ 통관우체국 내 세관통관장소
>
> √ 항공화물탁송 보세구역
>
> √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함)
>
> √ 입국장 보세구역내 설치한 장소
>
> · 인도장은 해당 공항 또는 여객항의 처음 출국편의 출발예정시간 1시간 전부터 마지막 항공편이 출발하는 때까지 운영합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8조제4항).

▪ 다만, 예외적으로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이 국산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여권 및 탑승권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인도가 가능합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제2항).

▹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및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여권(Passport Residence, PR)을 소지한 사람, 해외이주자로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영주할 목적인 재외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 및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12호).

출국장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 출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여권 및 항공권 확인 후 바로 인도받습니다.

기내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 기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출국하는 항공기 혹은 입국하는 항공기 내에서 인도받습니다.

> **※ 국내에서 환승하는 경우**

· 국내공항에서 다른 국내공항을 거쳐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하는 항공편이 출발하는 공항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습니다.

2.2.2. 제주도여행 시 면세품 인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

인도장에서 개별포장된 물품의 인수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성산포항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보관창고 또는 공·항만의 항역의 보세구역에서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인도장으로 운송된 뒤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5항).

▪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구매자별로 각각 포장하여 인도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

※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면세물품을 구매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 참조).

※ 면세품 인도장

"인도장"이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성산포항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곳으로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출발장에 설치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

· 제주국제공항에 위치한 인도장은 첫 항공편 출발 1시간 전부터 마지막 항공편이 출발하는 때까지 운영합니다.

· 항만시설에 위치한 인도장은 일반적으로 여객선 출항 1시간 전부터 여객선 출항 전까지 운영합니다.

인도확인 서명

▪ 면세품을 인도받으면 물품의 품명, 수량 등을 확인하고 면세품 구매자는 직접 서명하여 인도확인을 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 및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8조제7항 참조).

제주국제공항 또는 여객터미널에 위치한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

제주국제공항 또는 여객터미널에 위치한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의 인도

▪ 제주국제공항 또는 여객터미널에 도착해 발권·탑승수속을 마친 후 신분증, 탑승권을 제시하고 면세점을 방문해 면세품을 구입하므로 바로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2.3. 교환·환불 및 A/S 받기

2.3.1. 해외여행 시 면세품의 교환·환불 및 A/S

교환·환불

교환·환불 방법

▪ 면세품 구매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3조제1항).

▪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출국장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거나 시내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환된 물품은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출국장의 인도장에서 인도됩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3조제2항).

▪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에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세관에 신고되어 판매되는 상품으로 주문완료 후에는 상품변경, 색상변경, 사이즈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면세점 이용 시 청약철회

▪ 인터넷을 통해 면세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7일(물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이내에 매장방문이나 전화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서 반품·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일정 변경, 결항, 연착 등으로 물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 인도장에 반입된 후 5일이 경과해도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물품은 재고관리시스템에 미인도 물품으로 등록되어 해당 물품을 판매한 운영인에게 인계됩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2조제1항 본문).

▪ 다만, 판매취소 등 구매자의 미인수 의사가 명확한 미인도 물품은 인도장 반입 후 5일 경과 전이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한 운영인에게 인계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2조제1항 단서).

▪ 출국 시 인도받지 못한 상품은 30일 이내에 본인이 재출국할 때 인도받거나 환불할 수 있습니다. 재출국을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면세점에게 알려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제3항제5호).

A/S

각 브랜드별 A/S 정책

▪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각 브랜드별의 A/S 정책에 따라 물품의 수리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면세품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해당 브랜드의 A/S 정책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 기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환불·취소·교환 및 A/S는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내면세점명	사이트 주소
에어부산 면세점	https://dutyfree.airbusan.com/
제주항공 기내면세점	https://www.jejuair.net/ko/cabinService/service/dutyFree.do
아시아나항공 면세점	https://dutyfree.flyasiana.com/
대한항공 기내면세 SKYSHOP	https://www.koreanairdfs.com/

2.3.2. 제주도여행 시 교환·환불 및 A/S

교환·환불

교환·환불신청서 제출

▪ 구매자는 구매한 면세품을 교환 또는 환불하고자 할 경우 교환(환불)신청서에 교환·환불 사유 등을 기재하여 지정면세점에 제출하면 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교환·환불 사유 및 절차

▪ 지정면세점의 특성상 다음의 경우에 한해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2항).

- 환불신청을 했거나 교환할 수 없는 물품은 해당 물품의 판매내역을 취소합니다.
- 교환신청한 물품과 품명, 모델규격 등이 같은 물품에 한해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교환품의 인도

▪ 교환품은 구매자에게 송부하거나 재방문한 구매자가 제주도를 출발할 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3항 전단).

▪ 제주도에 거주하는 구매자가 교환신청한 경우에는 직접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4항).

A/S

각 브랜드별 A/S센터 이용

▪ 구매한 지정면세점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각 브랜드별 A/S센터 연락처와 A/S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A/S 받을 수 있습니다.

3. 면세품과 통관

3.1. 통관절차 알아보기

3.1.1. 통관절차 개요

통관절차 개요

세관신고서의 작성

▪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도착 전에 승무원이 항공기 또는 여객선 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배부해 줍니다.

▪ 신고서 기재요령을 읽어보고 의문이 나는 사항은 승무원에게 작성방법을 문의하여 빠짐없이 세관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세관의 휴대품검사

▪ 법무부의 입국심사절차를 마치면 수하물을 찾고 신고없음 또는 신고있음 세관통로 중 하나를 선택해 나갑니다.

▪ 세관의 휴대품검사는 X-ray 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를 이용한 간접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가방을 열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관

면세통관

▪ 여행자 1명당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범위는 품목별로 다음과 같고,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제1항 본문).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 5kg
- 잣 : 1kg
- 소고기, 돼지고기 : 10kg
- 그 밖의 품목 : 품목당 5kg
- 한약재: 인삼(수산, 백삼, 홍삼 등 포함), 상황버섯, 차가버섯 300g
- 녹용: 150g
- 그 밖의 한약재: 3kg

> ※ 면세통관범위 내의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이어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생물 질병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가 면제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제1항 단서).

▪ 한약은 각 품목별로 다음과 같이 면세통관되며,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서 10품목 이내로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1조).

- 모발재생제 : 100㎖ 2병

- 제조환 : 8g 20병
- 녹용복용액 : 12앰플 入 3갑
- 활락환 : 10알
- 다편환 : 10T 入 3갑
- 소염제 : 50T 入 3병
- 구심환 : 400T 入 3병
- 소갈환 : 30T 入 3병
- 인삼봉황 : 10T 入 3갑
- 삼편환 : 10알
- 백봉환 : 30알
- 그 밖의 한약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CITES」 등 관련 법령에서 반입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제2호가목).

- 술 : 용량은 2ℓ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다만, 반입한 술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술(병 기준)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함]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단,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
- 향수 : 100㎖

> ※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고, 「관세법」 제196조 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이 공제됩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과세통관

▪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했거나 반입이 제한된 물품을 반입한 경우 세관에 유치됩니다.

▪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반입할 경우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제3항).

반송

유치 및 반송

▪ 세관장은 여행자의 휴대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여행자가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을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06조제1항, 제207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제1항).

-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관세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
- 「국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이러한 물품은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송됩니다(「관세법」 제2조제3호).

반송신청

▪ 유치된 물품을 본인이 직접 반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치증 또는 예치증, 신분증, 항공기탑승권 또는 선박 승선권을 갖추어 세관장에게 반송신청을 해야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제1항 본문).

▪ 반송신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유치증 또는 예치증, 항공기탑승권 또는 선박 승선권, 반송위임장, 위임자의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피위임자의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제1항 단서 및 별지 제7호서식).

3.1.2. 세금납부 및 이의신청

간이세율

간이세율의 적용

▪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일정한 물품(주류 및 담배 제외)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제1항).

▪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및 「개별소비세법」 제2조제2호).

주요물품 관련 간이세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제1호).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72만 1천원 2백원 + 480만 8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 물품이 개당 500만원을 넘는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 이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품가격 480만 8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 고급 시계, 고급 가방 : 28만 8천 450원 + 192만 3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물품이 개당 200만원을 넘는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 이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품가격 192만 3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 제3호).

▹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19%

▹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18%

▹ 녹용 : 21%

▪ 그 외 물품에 대해서는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됩니다(「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 제4호).

기본세율

기본세율의 적용

▪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요물품 관련 기본세율

▪ 면세한도를 넘는 담배에 대해서는 정해진 관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0조, 「지방세법」 제49조제3항, 제150조제4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 관세(「관세법」 제50조 및 별표0 제4부제24류)

√ 잎담배 : 구입금액의 20%

√ 시가(cigar), 셔루트(cheroot), 궐련, 그 밖의 제조 담배 : 구입금액의 40%

▹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별표0)

√ 궐련 : 20개비당 594원

√ 파이프담배 : 1g당 21원

√ 시가(엽궐련) : 1g당 61원

√ 각련 : 1g당 21원

√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당 370원

√ 물담배 : 1g당 422원

√ 씹거나 머금은 담배 : 1g당 215원

√ 냄새 맡는 담배 : 1g당 15원

※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함)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해서는 위 종류별 세율에 각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 단서).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 및 제30조)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및 개별소비세를 합한 금액의 10%

▹ 담배소비세(「지방세법」 제52조제1항)

√ 궐련 : 20개비당 1,007원

√ 파이프담배 : 1g당 36원

√ 시가(엽궐련) : 1g당 103원

√ 각련 : 1g당 36원

√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ℓ당 628원

√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궐련형은 20개비당 897원, 그 밖의 유형은 1g당 88원

√ 물담배 : 1g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 1g당 26원

▹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4호)

√ 납부해야 하는 담배소비세의 43.99%

▪ 면세한도를 넘는 주류에 대해서는 정해진 관세, 부가가치세, 주세 및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0조, 「주세법」 제3조제2호, 「교육세법」 제3조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 관세(「관세법」 제50조 및 별표0 제4부제22류)

√ 맥주, 발포성 포도주, 베르무트(vermouth)나 그 밖의 유사한 포도주, 사과주, 배술, 미드(mead)와 같은 발효주, 위스키류,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진(gin), 보드카 등 : 구매금액의 30%

▹ 주세(「주세법」 제8조제1항)

√ 탁주 :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 약주·과실주·청주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30%

√ 맥주 :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앞의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림)

√ 증류주류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72%

√ 「주세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72%. 다만,

「주세법」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

√ 「주세법」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30%

▹ 교육세(「교육세법」 제3조제4호 및 제5조제1항)

√ 탁주, 약주, 과실주 및 청주 등 : 납부해야 하는 주세의 10%

√ 다음의 주류 : 납부해야 하는 주세의 30%

① 맥주(「주세법」 제8조제1항2제2호다목)

② 위 ① 외의 주류로서 주세의 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 및 제30조)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주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

▪ 담배와 주류 외에도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정해진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0조, 별표0,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개별소비세법」 제2조제2호 및 「교육세법」 제3조제2호).

세금납부

관세의 면제

▪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

▹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

√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수되지 않은 물품일 것

√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관세의 면제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범위"라고 함)로 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하거나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은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물 등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제1항에 따른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 위와 별도로 합산하여 2ℓ 이하 및 미화 400달러 이하의 술,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 250g(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향수 100㎖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전단).

>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은 2022. 9. 6.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됩니다.

세금의 계산

▪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면세범위를 넘는 반입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주류 및 담배 제외)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96조).

> **Q. 시내면세점에서 1,000달러 핸드백을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직원이 입국할 때 세관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던데 세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
> **A.**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는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다른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핸드백 전체가격 미화 1,0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200달러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 <출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자주하는질문-특수통관>

> ※ 구체적인 예상 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예상세액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수납 가능

▪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43조제1항제1호).

심사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 위법하거나 부당한 관세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19조제1항).

▪ 납세의무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고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해 해당 처분을 했거나 했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2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 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 처분의 내용
- 심사청구의 요지와 불복의 이유

이의신청

▪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했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3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7항).

3.2. 면세품 국내에 가져오기

3.2.1. 세관신고

세관신고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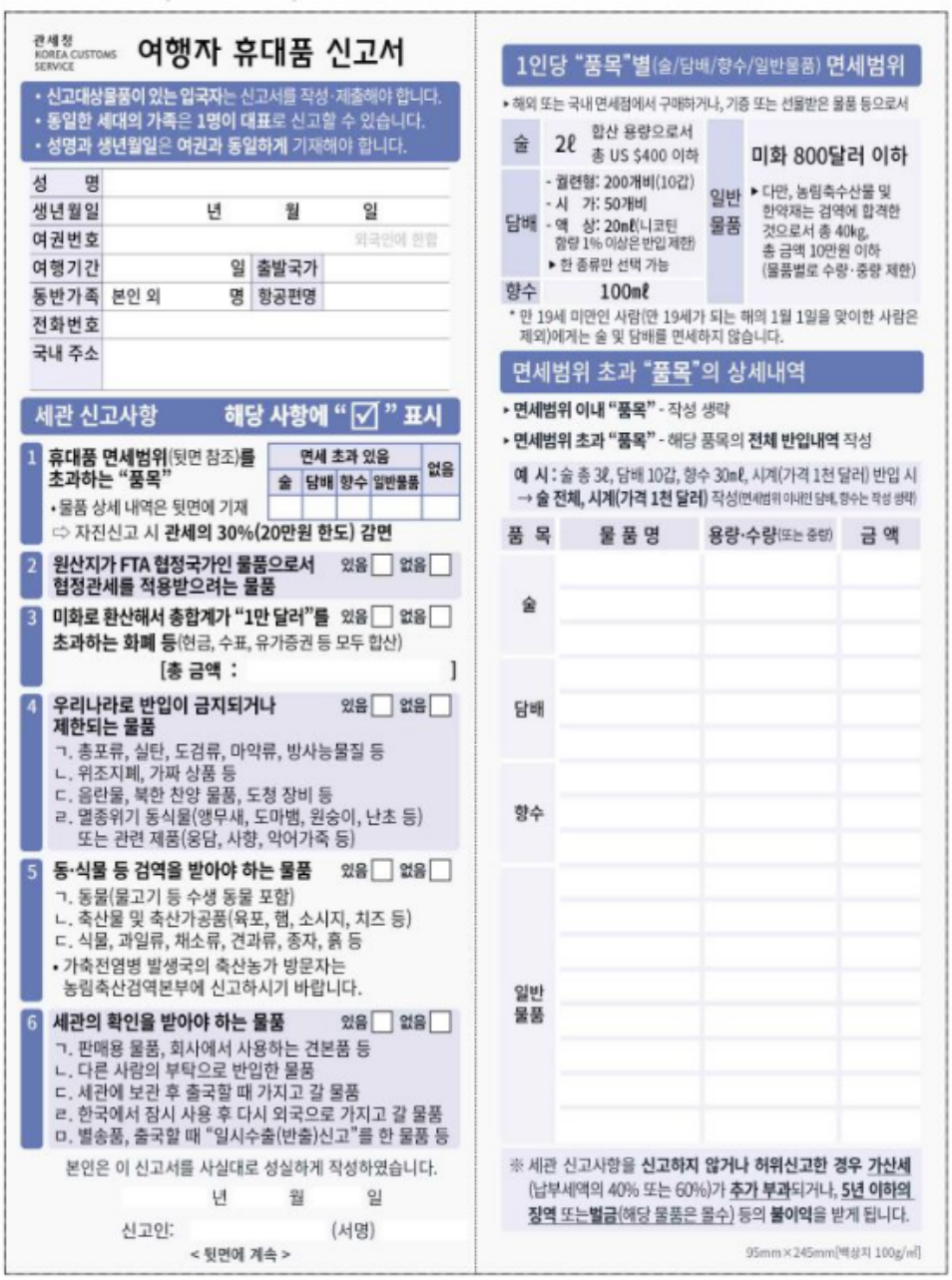
세관신고서의 작성자

▪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인적사항, 신고대상물품을 소지하였는지와 그 취득가격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여행자 서명란에 직접 서명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본문, 제5조제2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명이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해야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제1호).

-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 일행중 대표자 1명이 일괄신고해도 세관의 감시단속상 이상이 없다고 세관장이 판단한 단체학생여행의 경우
- 크루즈선을 이용해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
- 단체여행자의 경우

세관신고서 작성요령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동일한 세대의 가족은 1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성명과 생년월일은 여권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여권번호			외국인에 한함
여행기간	일	출발국가	
동반가족	본인 외 명	항공편명	
전화번호			
국내 주소			

세관 신고사항 — 해당 사항에 "☑" 표시

1 **휴대품 면세범위**(뒷면 참조)**를 초과하는 "품목"** — 면세 초과 있음: 술 / 담배 / 향수 / 일반물품, 없음
- 물품 상세 내역은 뒷면에 기재
- ⇨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 감면**

2 **원산지가 FTA 협정국가인 물품으로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 있음 ☐ 없음 ☐

3 **미화로 환산해서 총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화폐 등**(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 모두 합산) — 있음 ☐ 없음 ☐
[총 금액 :]

4 **우리나라로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 있음 ☐ 없음 ☐
ㄱ. 총포류, 실탄, 도검류, 마약류, 방사능물질 등
ㄴ. 위조지폐, 가짜 상품 등
ㄷ. 음란물, 북한 찬양 물품, 도청 장비 등
ㄹ. 멸종위기 동식물(앵무새, 도마뱀, 원숭이, 난초 등) 또는 관련 제품(웅담, 사향, 악어가죽 등)

5 **동·식물 등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 있음 ☐ 없음 ☐
ㄱ. 동물(물고기 등 수생 동물 포함)
ㄴ.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육포, 햄, 소시지, 치즈 등)
ㄷ. 식물, 과일류, 채소류, 견과류, 종자, 흙 등
- 가축전염병 발생국의 축산농가 방문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 있음 ☐ 없음 ☐
ㄱ. 판매용 물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
ㄴ.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
ㄷ. 세관에 보관 후 출국할 때 가지고 갈 물품
ㄹ. 한국에서 잠시 사용 후 다시 외국으로 가지고 갈 물품
ㅁ. 별송품, 출국할 때 "일시수출(반출)신고"를 한 물품 등

본인은 이 신고서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 뒷면에 계속 >

1인당 "품목"별(술/담배/향수/일반물품) 면세범위

- 해외 또는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하거나, 기증 또는 선물받은 물품 등으로서

술	2ℓ 합산 용량으로서 총 US $400 이하	일반물품	미화 800달러 이하 ▸ 다만,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에 합격한 것으로서 총 40kg, 총 금액 10만원 이하 (물품별로 수량·중량 제한)
담배	- 궐련형: 200개비(10갑) - 시 가: 50개비 - 액 상: 20㎖(니코틴 함량 1% 이상은 반입 제한) ▸ 한 종류만 선택 가능		
향수	100㎖		

* 만 19세 미만인 사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에게는 술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면세범위 초과 "품목"의 상세내역

- **면세범위 이내 "품목"** - 작성 생략
- **면세범위 초과 "품목"** - 해당 품목의 **전체 반입내역** 작성

예 시 : 술 총 3ℓ, 담배 10갑, 향수 30㎖, 시계(가격 1천 달러) 반입 시 → **술 전체, 시계(가격 1천 달러)** 작성(면세범위 이내인 담배, 향수는 작성 생략)

품 목	물 품 명	용량·수량(또는 중량)	금 액
술			
담배			
향수			
일반물품			

※ 세관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한 경우 가산세**(납부세액의 40% 또는 60%)가 **추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해당 물품은 몰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95mm×245mm[백상지 100g/㎡]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 세관신고서는 검사대상 선별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사실 그대로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 세관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의사항´, ´면세 허용범위´, ´신고대상물품´ 등 통관안내사항을 확인합니다.

▪ 신고할 휴대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 뒷면의 신고대상물품 중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별송품이나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해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휴대품 전자신고를 통해 세관에 제출한 경우 해당 신고서 1부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 세관신고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뒷면의 신고인란에 서명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시 편의 제공

▶ 자진신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와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및 제2조제17호).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을 포함함)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2. 1명(출생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해당 연도에 만19세가 되는 사람 포함)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 만 19세 미만인 사람(날짜 계산을 하지 않고,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함)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3. 판매 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
4.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함),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5. 양귀비·아편·코카 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6.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7.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8.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9.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함),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함), 그 밖의 식품류
10.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악세사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함)
11.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12.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13.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
14. 우리나라에 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 시 반송할 물품

세금 경감

▪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함)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96조제2항).

현품확인 생략 가능

▪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출한 세관신고서의 여행자 인적사항, 반입물품 신고내역, 취득가격 등과 실제 반입한 물품의 양, 세관직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세관표지를 부착하였는지등을 고려해 현품을 확인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

▪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세관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이높거나 물품의 양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본문).

▪ 다만, 세관표지(TAG)가 부착되어 있거나 우범여행자 또는 동태감시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을 확인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단서).

신고금액 인정

▪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관세법」 제113조제1항).

▪ 이에 따라 자진신고한 여행자와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3조).

세금사후납부 가능

▪ 세금사후납부제도란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이를 자진 신고한 경우 물건을 먼저 통관해 가져갈 수 있게 해주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주거지 근처 은행에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체납자, 우범여행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 그 밖에 세관장이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국내 거주자로서 반입한 휴대품을 신고한 모든 내국인 여행자는 세금사후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8조).

> ※ 2014년 5월부터 여행자휴대품 통관 시 세금사후납부액 한도를 200만원으로 확대하여, 자진신고한 여행자가 납부할 세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원하면 세금사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출처: 관세청, <2014년 4월 29일자 보도자료>).

허위신고 등의 제재

가산세의 부과

▪ 모든 입국여행자 및 승무원이 자진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관세법」 제241조제5항제1호, 「관세법 시행령」 제247조제4항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통고처분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11조).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관세법」에 따른 처벌

▪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관세법」 제241조 및 제276조제2항제4호).

3.2.2. 휴대품검사

휴대품검사

간이검사

▪ 세관신고서에 신고대상이 없다고 기재한 여행자 또는 승무원을 검사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현품확인 전에 X-ray검색기에 의한 간이검사를 우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

현품검사 및 개장검사

▪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제출한 세관신고서의 여행자 인적사항, 반입물품 신고내역, 취득가격 등과 실제 반입한 물품의 양, 세관직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세관표지를 부착하였는지 등을고려해 현품을 확인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

▪ 세관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거나 물품의 양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표지(TAG)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우범여행자 또는 동태감시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본문).

▪ 세관표지(TAG)가 부착되어 있거나, 우범여행자 또는 동태감시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품을 확인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단서).